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4.



서 민 우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서민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,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4월 7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(서민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923042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3. 4. 7.

발의자: 서민우, 고명욱, 도하석, 황국주,
권숙자, 박정환, 박종길, 박왕규,
이영빈, 이진환

1. 제안이유

달서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내용(안 제4조)
- 라. 보건위생물품 지원 홍보 및 실태조사(안 제5조부터 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, 제17조,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,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12조
- 나.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달서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시설”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시설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보건위생물품”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, 방법,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홍보)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, 수요과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(생략)

□ 청소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~5. (생략)

6. “청소년시설”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17조(청소년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,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,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- ② ~ ⑤ (생략)